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
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71
----------	-----

2021. 7. 20.(수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발의일자 : 2021년 6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7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7월 12일

-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장거래 소방본부장)

가. 제안이유

- 포상금 등의 지급에 대한 인용 조항의 오기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인용 조항 오기사항 정정(안 제7조제1항,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)
 - 안 제7조제1항 : 본문 중 제9조 → 제10조, 단서 중 제4조제2항 → 제3조제2항

3. 검토보고 요지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- 포상금 등의 지급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 위원회 개최 및 개최 제외경우에 대한 인용 조문의 오기사항 및 안 별지 1호부터 5호까지 관련 조항 오기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.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호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
- 「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인용 조항에 대한 단순한 오기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7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6월 30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인용 조항에 대한 오기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인용 조항 정정(안 제7조, 별지 제1호, 제2호, 제3호, 제4호 및 제5호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제9조”를 “제10조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제4조제2항”을 “제3조제2항”로 한다.

별표의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

별지 1 중 “제3조”를 “제4조”로 한다.

별지 2 중 “제4조”를 “제5조”로 한다.

별지 3 중 “제4조”를 “제5조”로 한다.

별지 4 중 “제9조”를 “제10조”로 한다.

별지 5 중 “제9조”를 “제10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포상금 등의 지급) ① 소방서장 등은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<u>제9조</u>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제4조 제2항</u>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소방서장 등이 현장 확인 결과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포상금 등의 지급) ① ----- ----- --- <u>제10조</u>----- ----- -----, <u>제3조</u> <u>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관계 법령 발췌

□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

제7조(포상금 등의 지급) ① 소방서장 등은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**제9조에**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**제4조제2항**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소방서장 등이 현장 확인 결과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포상금 등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.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한다.

③ 포상금은 1회당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.

④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금액은 월간 50만원,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.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.

⑥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.